

구 석 명 신 청 서

사 건 2025나386 손해배상(자)

원 고 최 애 숙 외 2

피 고 케이지모빌리티 주식회사(변경 전: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2026. 2. 13.자 준비서면 43쪽에서 (1) “이 사건 자동차에 레이더와 카메라를 모두 활용하는 AEB가 탑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이상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AEB가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합니다.” 라고 기재함을 통하여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이상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는 실질적·현실적 대체설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고, (2) “티볼리 차량과 같은 저가 사양의 자동차에는 카메라만 활용하는 AEB가 탑재된 경우가 상당한데, 예를 들어 국내에는 현대자동차의 포터와 기아의 봉고3 트럭에 위와 같은 AEB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더를 활용하지 않고 카메라만 활용하는 AEB에 대한 설계 선택을 이유로 AEB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고 기재함을 통하여 티볼리 차량과 같은 저가사양의 자동차에는 ‘카메라만 활용하는 AEB’를 탑재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석명을 구합니다.

- 다 음 -

1.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이상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는 실질적·현실적 대체설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 (1) 레이더는 중거리 및 원거리에 있는 전방의 장애물을 잘 파악하고 그와 같은 전방의 장애물과의 거리를 잘 파악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이상 밟아 AEB의 작동을 해제하는 경우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는 ‘카메라만 활용하는 AEB’의 합리적 대체설계로서 설계 채택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지
- (2)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60% 미만으로 밟고 있는 상황에서는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는 실질적·현실적 대체설계에 해당하는지
- (3) 피고가 개발단계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레이더가 없는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설계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i) 피고가 검토했던 대체설계들이 무엇이었는지, (ii) 피고가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iii) 당시 검토한 대체설계들과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의 원가 차이는 얼마였는지, (iv) 당시 검토한 대체설계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가 성능 및 기술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은 무엇이었고,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점은 무엇이었는지, (v)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한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장착하고 실시한 시험(테스트)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시험을 어디에서 실시했는지

2. 티볼리차량과 같은 저가사양의 자동차에는 ‘카메라만 활용하는 AEB’를 탑재한 경우가 많다는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 (1)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가 저가사양의 자동차라고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 (2) 승용차인 이 사건 자동차와 경쟁하는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의 승용차 차종들에 장착된 AEB 중에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는 없고, 모두 다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를 장착하고 있는지
- (3)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장착한 승용차는 전혀 없고,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장착한 차량은 상용차인 현대자동차의 포터와 기아의 봉고3 트럭 두 차종만 있는지
- (4)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는 모빌아이가 공급한 SoC(System on Chip)인 ‘EyeQ 3’를 사용하고 있는지
- (5) 이 사건 자동차에 장착된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를 공급한 부품 제조업체는 어디인지, 그 부품 제조업체는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도 생산하는지, 그 부품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레이더 + 카메라 기반 AEB’의 공급가격과 ‘카메라만을 활용하는 AEB’의 공급가격간의 차액은 얼마인지

2026. 5. .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중 선

서울고등법원(춘천) 제2민사부(다) 귀중